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16 발의연월일: 2024. 12. 12.

발 의 자:주철현・어기구・조계원

박균택 • 이건태 • 안호영

정성호 · 천하람 · 백승아

황명선 · 문금주 · 모경종

조인철 · 송기헌 · 민형배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 관리규정의 작성·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 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.

다만, 수중레저 및 수상레저 모두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기관이 상이하여 레저활동을 즐기는 일반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,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도 담당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현지성이 높은 일부 사무의 경우 지역이해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

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해양경찰 청장으로 이관하면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 해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중 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조 등).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제4조제5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각각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및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,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, "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 어 수중레저활동"을 "수중레저활동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한다. 제15조제1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각각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19조 전단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한다.

제23조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각각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26조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27조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28조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32조제3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"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 기본계획으로 본다.
- 제3조(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.
- 제4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 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등록・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등록・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등록・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) ①	제4조(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) ①
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	
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(이하	
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	
시행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안전과</u>
	관련된 분야는 해양경찰청장이
	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
	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	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
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	<u> 찰청장</u>
에게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	
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	
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관	
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	
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	
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7조(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	제7조(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
행) ①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은 수중	행) ① <u>해양경찰청장</u>
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	
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	
(이하 "안전관리규정"이라 한	

다)을	작성하여	시행하여야	한
다.			

② (생 략)

- 제10조(안전점검)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 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,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 물 등(이하 "수중레저기구등"이 라 한다)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한다.
 - ② <u>해양수산부장관</u>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수중 레저기구등의 안전에 문제가 있 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기구 등의 사용정지 또는 정비·원상 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<u>해양수산부장</u> 관의 명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 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④ (생 략)

- 제13조(수중레저활동의 제한) ① 지 (생 략)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

②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안전점검) ① <u>해양경찰청</u>
장
· ② 해양경찰청장
<u> </u>
③ <u>해양경찰청장</u> -
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수중레저활동의 제한) ①
(현행과 같음)
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 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 략)
- 제14조(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저 지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 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 - 1. ~ 4. (생략)
 - ② (생략)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・군 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①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| ① ------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

<u>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</u>
군수 및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
구의 구청장을, 서울특별시의
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
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
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
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·
<u>구청장"이라 한다)</u>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. — - , — , .
세14조(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
지정 등)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
<u>시장・군수・구청장</u>
<u>수중레저활동</u> -
1. ~ 4. (현행과 같음)

- ② (현행과 같음)
- 수·구청장-----

제15조(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) 제15조(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)

을 갖추어 <u>해양수산부장관</u>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 제18조(휴업·폐업 등의 신고) ① 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해</u>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사업장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이용요금) 수중례저사업자는 탑승료 · 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22조(영업의 제한) <u>해양수산부</u>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<u>해양경찰청장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(휴업ㆍ폐업 등의 신고) ①
<u>해</u>
<u>양경찰청장</u>
②
<u>해양</u>
<u> 경찰청장</u>
제19조(이용요금)
해양경찰청장
<u>.</u>
제22조(영업의 제한) <u>해양경찰서</u>
<u>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
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 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 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23조(자료 제출 등) <u>해양수산부</u> <u>장관</u>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 중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24조(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) <u>해양수산부장관</u>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 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다.

1. ~ 6. (생략)

제25조(과징금) ① <u>해양수산부장</u> 관은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
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자료 제출 등) <u>해양경찰청</u>
장
제24조(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
등) <u>해양경찰청장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25조(과징금) ① <u>해양경찰청장</u> -

지기	' }	0]-	용 7	\	등	에	게	심	한	불	편
을	주	거1	나	공	익	을	해	칠	우	려	가
있는	<u>-</u>	경-	우	게는	<u>-</u>	영	업 7	정ス]처	분	을
갈음	슬ㅎ	라	2	2천	만	원	(٥	하	의	과	징
금을	<u> </u>	부	과학	할	수	(ک کر	(다				

- ② (생략)
- ③ <u>해양수산부장관</u>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 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제26조(수수료) 제15조에 따라 수 중레저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해</u>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한다.
- 제27조(청문) <u>해양수산부장관</u>은 제24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 야 한다.
- 제28조(권한의 위임) <u>해양수산부</u> <u>장관</u>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, 시·도지 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

② (현행과 같음)
③ 해양경찰청장
제26조(수수료)
<u>해</u>
양경찰청장
제27조(청문) <u>해양경찰청장</u>
·
제28조(권한의 위임) 해양경찰청
<u> 장</u>